

## 대리점카드 회원 특약

### 제 1조 (카드의 정의)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대리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는 판매기업의 추천에 의해 발급되는 구매전용카드입니다.

### 제 2조 (카드의 발급)

카드는 판매기업에서 구매기업이 거래처임을 확인하고 은행이 승낙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되며, 카드실물발급은 생략됩니다.

### 제 3조 (카드의 이용 등)

1. 카드는 판매기업의 상품 혹은 용역을 구매하는 전용카드이므로 동 구매와 관련 정당한 거래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타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구매기업은 판매기업과의 상품 및 용역거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금을 은행에 납부함으로써 판매기업에 대한 지급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동의하며, 판매기업의 거래계약내용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협의 및 소송을 통해 해결하며 은행에는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3. 구매기업은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할 경우 판매기업이 작성한 매출전표를 확인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단, 은행이 판매기업의 매출전표 제출을 면제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구매기업은 판매기업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용역대금, 지급의 지체 및 할부로 인한 이자를 은행에 납부함으로써 판매기업에 대한 상품 및 용역대금 지급채무, 연체수수료 및 할부수수료 지급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구매기업이 카드의 사용정지 또는 해지를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판매기업에게 이를 서면통지하고 구매기업의 미결제 카드대금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카드의 사용정지 또는 해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은행은 판매기업의 요청시 카드의 사용정지 또는 해지의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
7. 은행과 판매기업간 카드발급에 관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이 정지됩니다.

### 제 4조 (카드의 이용한도)

1. 구매기업의 카드 이용한도는 판매기업이 지정한 한도 또는 은행이 지정한 한도로 운영됩니다.
2. 카드이용한도는 은행이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의 거래 또는 신용 상태를 고려하여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이 한도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매기업에 요청하여 변경하도록 합니다.

### 제 5조 (연회비)

카드의 연회비는 면제합니다.

### 제 6조 (자동대체결제)

1. 구매기업은 은행 또는 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결제대금은 결제일까지 지정결제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입금 지연시 한국씨티은행과 대리점카드 판매기업 사이에 약정한 소정의 연체수수료를 가산하며, 또한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를 관리합니다. 연체수수료율은 실세금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 7조 (기한의 이익상실 및 담보권의 양도)

1. 다음 각호의 경우 구매기업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즉시 미결제 카드대금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 ① 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고 은행이 정한 소정기일내에 연체대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② 판매기업과 구매기업간의 거래가 해지된 경우
  - ③ 은행과 판매기업간의 카드에 관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 ④ 본 카드에 의한 거래가 법률 또는 감독기관에 의해 금지된 경우
2. 은행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기 1항에 따른 미결제 카드대금의 즉시 변제를 은행이 아닌 판매기

업에 할 것을 통지할 경우,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앞 미결제 카드대금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항의 경우,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앞 보유한 카드대금채권을 은행에 양도할 수 있고, 은행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앞 보유하고 있는 담보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 8조 (기타사항)

본 특약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은행 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 타행출금이체신청약관

1. 당사는 (주)한국씨티은행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에 (주)한국씨티은행에서 청구하는 카드대금을 당사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예금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 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금융기관의 자동이체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납기일이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청구가 있을 경우 출금우선순위는 금융기관 임의로 정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4.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 출금은 (주)한국씨티은행의 청구대로 청구하되 출금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한국씨티은행과 직접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5. 본 자동이체 신청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 귀책사유가 없는 한 당사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